

##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2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법제처의 「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」를 통하여 권고된 사항으로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취급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
- 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취급 공무원의 의미 명확화(안 제2조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근거법규

법제처 「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」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: 2017. 11. 6. ~ 2017. 11. 27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12호

##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”을 “포상금”으로, “각 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”을 “소송수행자 또는 ‘소송대리인’으로 표시된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‘소송담당자’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중구가 원고인 경우 :”를 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원고인 경우:”로, “70퍼센트 이상”을 “100분의 70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울산광역시 중구”를 “구”로, “중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:”를 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피고인 경우:”로, “70퍼센트”를 “100분의

70"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)"을 "(공동 소송수행자 지급 기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균등분배한다"를 "균등 분배한다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"을 "구 또는 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판단 결정한다"를 "판단·결정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를 지급하지 않는다"를 "지급하지 아니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파기 환송"을 "파기 환송"으로, "각호의 1의 기준"을 "각 호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이를"을 "호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"(본안)"을 각각 "(본안):"으로, 같은 호 중 "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"를 "「소액사건심판법」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: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(행정, 민사소송)"을 "(행정 및 민사소송):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재정에"를 "재정상"으로, "6배까지"를 "6배"로 한다.

제6조 중 "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한다"를 "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포상금 지급대상자) <u>이 조례</u>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<u>소송수행자</u>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1. 울산광역시 <u>중구가 원고인 경우</u> :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<u>70퍼센트 이상</u>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</p>	<p>제2조 (포상금 지급대상자) <u>포상금-</u>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<u>'소송수행자' 또는 '소송대리인'</u> <u>으로 표시된 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 다 만,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<u>'소송담당자'</u>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.</p> <p>1. ----- <u>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</u>가 원고인 경우: ----- ----- <u>100분의 70이</u> <u>상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피고인 경우</u> :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<u>70퍼센트</u>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</p>	<p>2. <u>구</u> ----- <u>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피고인 경우</u>: ----- ----- <u>100분의 70</u> ----- -----</p>
<p>제3조 (<u>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</u>)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<u>균등</u> 분배한다.</p>	<p>제3조(<u>공동 소송수행자 지급기준</u>)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균</u> <u>등</u> 분배한다.</p>
<p>제4조 (<u>포상금 지급기준</u>) ① <u>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<u>판단</u> 결정한다. 다만,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.</p>	<p>제4조(<u>포상금 지급기준</u>) ① <u>구 또는 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판단</u>. <u>결정한다.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이를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파기 환송</u>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</p>	<p>③ ----- ----- <u>지급</u> <u>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파기환송</u>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</p>
<p>제5조 (포상금 지급액)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행정소송(본안) 1명당 200,000원 이내</p> <p>2. 민사소송(본안) 1명당 200,000원 이내 <u>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</u> 1명당 20,000원 이내</p> <p>3. 신청사건(행정, 민사소송) 1명당 20,000원 이내</p>	<p>제5조 (포상금 지급액) ① ----- ----- <u>호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(본안): ----- -----</p> <p>2. -----(본안): ----- --- 「<u>소액사건심판법</u>」에 따른 <u>소액사건의 경우</u>: ----- -----</p> <p>3. -----(행정 및 민사소송):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<u>6배까지</u>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 (표창)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<u>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은 따로 표창을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6배</u>----- -----.</p> <p>제6조(표창) ----- ----- ----- <u>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에게는 <u>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.</u></p>

### 참고 1 법제처 「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」 정비과제 내용

조항	현행 조례의 내용	문 제 점	개선방안
제2조 각 호외 분문	<p>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함</p>	<p>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'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'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, 소송업무취급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송업무취급공무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.</p>	<p>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취급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.</p>